

상지대발달장애인 통합지원센터 운영규정

제정 2020. 11. 06.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센터는 상지대학교 부설 상지대발달장애인 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 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설립목적) 센터는 발달장애인의 돌봄과 치료를 통하여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발달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증진과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센터는 상지대학교 캠퍼스 내에 둔다.

제4조(사업) 센터는 제2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돌봄 프로그램 운영
2.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가족지원 서비스 운영
3.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지원
4. 발달장애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
5. 발달장애 치료 및 개선을 위한 연구 및 개발
6. 기타 센터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조직

제5조(센터장)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센터를 통제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인력) ① 센터에는 제4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 연구진을 둘 수 있으며 시설장, 전담인력, 제공인력, 치료사 등을 둔다.

② 센터에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7조(구성) ① 센터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외협력처장, 학생행복처장, 보건의료과학대학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4인 이내의 외부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어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8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돌봄 및 서비스사업 계획운영에 관한 사항
2. 만족도 조사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9조(의결사항) 위원회의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임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회계

제11조(회계연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상지대학교의 회계연도로 한다.

제12조(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① 센터장은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말 까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의 지원사업 등의 수입은 교비회계에 포함하여 관리한다.

제13조(결산 및 사업보고) 센터장은 센터의 결산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수입원) 센터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바우처 수입
2. 서비스 이용 요금
3. 정부 및 유관기관의 보조금
4. 학교지원금
5. 기타 수입

제5장 보칙

제15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기획예산팀-710, 2020.11.06.)

이 규정은 2020년 11월 06일부터 시행한다.